2-1 노인실명예방사업

1. 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3. 사업개요

가. 사업연혁

- 사업기간 : '03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8,739백만원('03~'11 까지 투자액)
- 사업규모 : 안검진 97,307명, 개안수술 23,166안('03~'11년까지)

※ '11년도 실적 : 안검진 12,718명, 수술 2,999안(백내장 등 2,710안, 망막질환 289안)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100% ('03~'05년 국고보조, '06~ 국민건강증진기금)

나. 2012년 대상 인원 및 예산

(단위 : 명, 안, 백만원)

검진인원	개안수술		예산액			
	백내장 등 기타질환	망막질환	계	검진비	개안수술	저시력재활사업 등 기타
11,000	2,350	190	1,326	399	764	163

다. 사업 집행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이하 '재단')

-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확대 실시 가능

라. 사업목표 : 안검진 대상인원 11,000명, 개안수술 2,540안

마. 사업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4. 노인 안검진 사업

가.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나.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다. 대상지역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시·도별 안검진 대상인원 및 대상지역 수요 파악('12.1~2월)·확정 후 시·도 및 재단(02·718·1102, http://www.kfpb.org)에 통보
- (시·군·구 보건소) 만 60세 이상 검진 희망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시·도에 신청
- (시·도) 노인 안검진을 희망하는 시·군·구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아래 양식에 기재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신청(공문 송부)

  - 농어촌 지역 우선

    ※ 농어촌 지역 관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참고

  - 노인인구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지역 우선
  - 시·도별 신청을 받아 예산상 수용인원(11천명)에 맞추어 안검진 대상지역 및 안검진 인원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지역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시군구 (우선순위별)	검진장소	검진기간	검진희망 예상인원	안과의료 기관수	최근 검진 실적(2년간)	담당자 및 연락처

※ 안과취약지역 안내

- 관내 시·군·구에 안과 의료기관이 전혀 없거나 안과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 전년도의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검진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나 안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 등 우선순위 부여

※ 검진지역이나 검진인원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 재신청 받을 수 있음

- (재단) 시·군·구 안검진 희망지역 현지출장계획서 복지부에 제출 및 검진 실시
  - 약 55개 시·군·구 지역 안검진 실시 예정(시·군·구당 약 200명, 총 11천명)
  - 재단은 필요시 확정된 검진지역과 검진인원, 검진일정, 검진장소 등 세부 사항을 시군구 및 시도와 수시 협의 조정·시행
  - 검진기간은 안과전문의 인력 수급 등의 사정으로 3월~11월말까지로 하되, 안검진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구 및 시도와 긴밀 협조 체계 유지 필요

라. 검진항목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마. 안 검진 방법 및 절차

- 재단 안검진시 1차, 2차 안 검진은 1회 병행 실시 원칙
- 검진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장비 확보, 기타 안검진 소요비용은 재단에서 부담
- 시·군·구(보건소) 또는 재단 검진 일정에 안 검진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검진기관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추가 검진 실시 가능

바. 검진 결과 통보 및 조치사항

- 재단은 개안수술대상자를 포함한 안 검진결과를 판정 후 10일 내에 해당 시·군·구(보건소)에 통보
- 시·군·구(보건소)는 노인건강검진 내 안검진 결과와 동 사업 내 안 검진 결과를 토대로 기준에 적합한 자의 개안수술 지원신청서를 취합하여 재단에 송부(서식 1호, 안과 진료의뢰서 첨부)

사. 실시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수요 파악, 예산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 (재단) 이동 검진팀 운영 및 검진 실시, 상담·홍보·보건교육 등
- (시도) 시·군·구 지도·감독, 노인 안 검진 시행지역 우선순위 파악 및 복지부에 신청
- (시군구 보건소) 안 검진 필요 대상자 조사 후 시·도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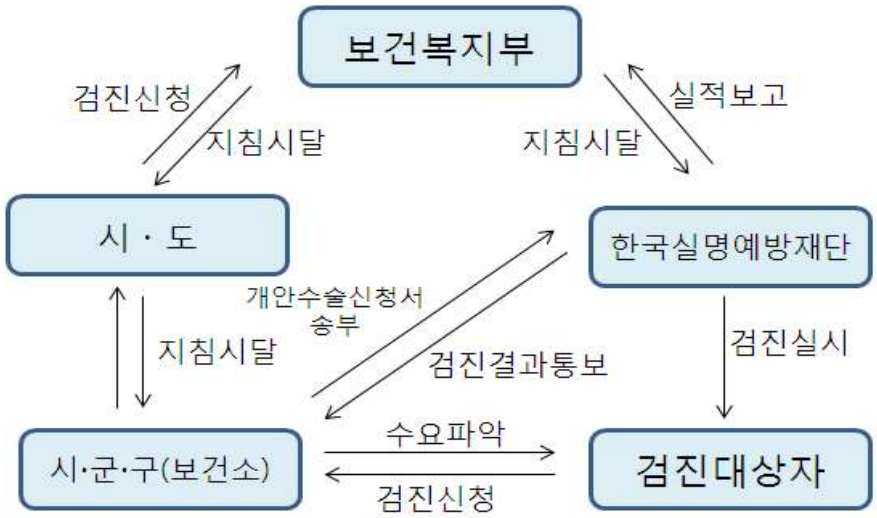

<노인 안 검진 사업 실시체계>

5. 노인 개안수술 사업

가.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50	2,629	3,806	4,387	4,702
전국가구 월평균소득50%	725	1,314	1,903	2,194	2,351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2,115 (23,564)	38,136 (40,634)	55,318 (58,941)	63,724 (67,898)	68,530 (73,019)	73,352 (78,156)	77,814 (82,911)	82,144 (87,524)	90,219 (96,128)
지역가입자	4,319 (4,602)	23,550 (25,093)	49,541 (52,786)	63,488 (67,646)	71,124 (75,783)	78,281 (83,409)	84,176 (89,690)	90,699 (96,640)	97,708 (104,108)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 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 실시)

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정보→정책정보→정책사업→노인개안수술지원 신청서

②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서식2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다. 사업실적보고

- 시·군·구(보건소)는 매 분기 개안수술 접수 및 선정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로 보고, 시도는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분기별 실적 보고
- 재단은 분기별 다음달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라.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
- (지원범위)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수술 후 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상한액 4만원 범위내에서 하나만 지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지정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등의 경우 지원)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 또는 돋보기의 경우 4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

마.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바. 실시체계

-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예산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 (재단) 수술 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사후 관리, 홍보·보건교육 등
- (시도) 시·군·구 지도·감독, 개안수술 실적보고
- (시군구 보건소) 개안수술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재단으로 신청서 송부, 개안수술 실적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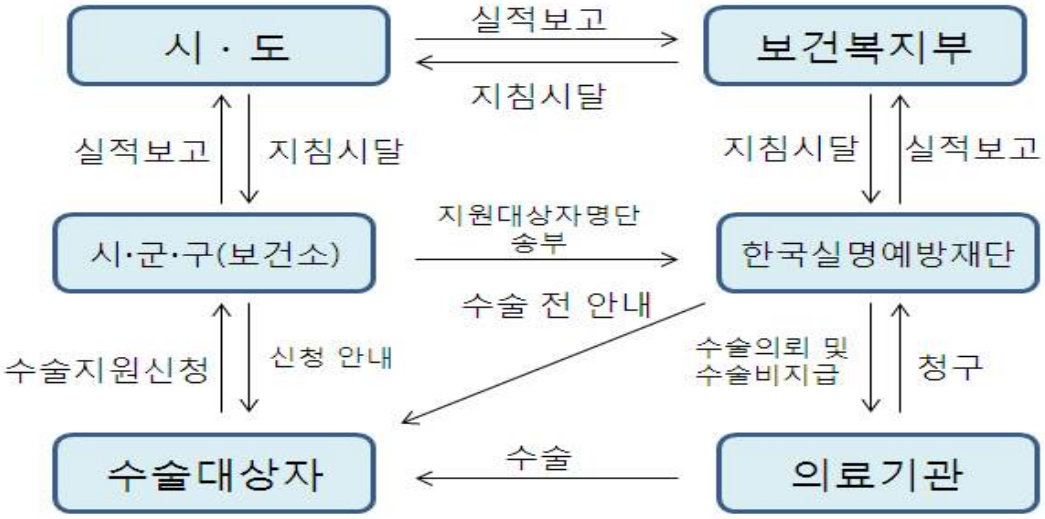

<노인 개안수술 사업 실시체계>

6. 행정사항

가. 홍보 및 교육 강화

- 시·군·구(보건소) 및 재단은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인무료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
- 시·군·구(보건소) 및 재단에서는 안 검진 및 개안수술 개요, 안질환 유형, 수술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한 책자발행을 통한 보건교육 실시(VTR, 재단에서 제작·배포)
  - 노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 보건교육 연중 실시
- 시·군·구(보건소) 및 재단에서는 안 검진 및 수술관련 통계 및 실적을 연도별로 집계하여 향후 노인 안 검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실적 보고 등 추진일정

-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별 검진일정 홍보 등 검진 준비 : '12. 2.
-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 보고(재단→보건복지부) : 분기별 및 연간 보고

【서식 1호】 노인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table>
<tr><td colspan="5">신청자</td></tr>
<tr><td>성 명</td><td></td><td rowspan="2">연락처</td><td>자택</td><td></td></tr>
<tr><td>대상자와의 관계</td><td></td><td>휴대폰</td><td></td></tr>
<tr><td colspan="5">지원 대상자</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4"></td></tr>
<tr><td>진단명</td><td colspan="2"></td><td>수술희망병원
(전화번호)</td><td></td></tr>
<tr><td>구 분*</td><td colspan="4">☐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건강보험(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td></tr>
<tr><td colspan="5">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 건 소 장 귀 하</td></tr>
<tr><td colspan="5">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자* _____
(연락처)*_____</td></tr>
<tr><td colspan="5">※ 보건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해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송부</td></tr>
<tr><td colspan="5">※ 첨부서류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td></tr>
</table>

* 보건소 담당자 기재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는 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가감해서 사용

[서식 2-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
○ 관련사항 : 개안수술 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 지원
○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수술시행 의료기관
○상 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서식 2-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65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